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공무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 요구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비 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숙박비 현실화에 따른 출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 준용(안 제4조)

나.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
(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된 숙박비 단가에 맞춰 예산 확보

다. 협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월15일”을 각각 “월 15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하“시장””을 “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 (이하“영””을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으로 한다.

제4조 중 “구미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2)의 제목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제2호 중 “각각“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6조(종전의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5호 중 "「지방 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8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u>지방공무원</u>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u> <u>방공무원</u> ----- ----- ----- -----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u>공무원</u>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u>월15일</u>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u>월15일</u>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u>경우에</u>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u>구미시 지방공무원</u>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u>범위</u> ----- ----- ② ----- <u>월 15일</u> ----- ----- - <u>월 15일</u> ----- ----- ----- ---. -- <u>경우</u> ----- ----- ----- ----- ----- ③ ----- -----

사항에 관하여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생략)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구미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생략)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이 하 "시장"-----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 원----- ----- ----- 따라 -----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현행과 같음)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 ----- 각각 "시 장"-----. 3. ----- "인 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
--	--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구미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을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신 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생략)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구미시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현행과 같음)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u>"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은 <u>"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으로, <u>"공무원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 보수규정"</u>으로, <u>"공무원임용령"</u>은 <u>"지방공무원 임용령"</u>으로, <u>"일반임기제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u>으로, <u>"전문임기제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u>으로 한다.	<u>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u> 8. ----- ----- <u>"「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은 <u>"「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으로, <u>"「공무원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 보수규정」"</u>으로, <u>"「공무원임용령」"</u>은 <u>"「지방공무원 임용령」"</u>----- ----- ----- ----- -----.
--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 ④ 생략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생략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여비(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요구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숙박비 정액 지급단가 상향 조정(당초 4만원 ⇒ 변경 지역별 5/6/7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15년 관외출장에 따른 숙박비 지급일수가 월평균 600일 정도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 600일 × 10천원(상향조정분) × 12월 = 72,000천원

4. 작성자

총무과 인사계장 김태영 (480-6771)

총무과 행정8급 김석찬 (480-6775)

소관 실 · 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김 종 율
	담 당	김 태 영
	담 당 자	김 석 찬 (480-6775)